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-143호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.

2021년 4월 26일

금융위원회 위원장

- 다 음 -

1. 부수업무 신고 기관 : 우리신용정보(주)

2. 부수업무의 신고일 : ’21.4.12.

3. 부수업무의 내용

○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

*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제7항제3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제3호 및 동 감독규정 제13조의4제5항제1호